

의료기관과 심사기관의 심사업무인식도 비교연구

- 종합병원 청구직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직원을 중심으로 -

이수연*, 하호욱**, 손태용***†

이화여대 목동병원 보험과*,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Awareness of Review Work of Medical Institutions and Review Institutions

- Focusing on Insurance Claim Officers at General Hospitals and Review Officers at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

Soo-Yun Lee*†, Ho Wook Ha**, Tae Yong Sohn***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Dept. of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Welfare,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Yuhan Colleg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s, continuing education, and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speciality and educational course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work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policies of personnel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to smoothly perform hospital's insurance claim work and Agency's review work. The analysis unit of the study

† 교신저자 : 손태용(011-9941-0842, sohnty@yuhan.ac.kr)

is individuals, and survey was conducted among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have conflicting awareness about review standards; more Agency's review officers think that current review standards are universal and reasonable, while more hospital's claim officers believe that they need to be revised. Especially, hospital's claim officers replied that it is possible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government's policies.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 In particular, both groups share the opinion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officer's interpretation of review standards.

Third, Both review officer groups feel the need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urt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both groups members should be educated in review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while 81.5% of Agency's review officers the education should be offered at the Agency, only 45.2%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greed to it.

Fifth, both review personnel do not show any difference in awareness of needed experience to successfully perform review work; both groups replied that three to four years experience is necessary to smoothly perform claim work and review work.

This study was tried in order to search for directions to improve Korean insurance review work in quality rather than to explore characteristics themselves of individual factors. In this sense, this study presupposed an intention that the educational subjects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two groups should be the same in order to narrow the awareness gap between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offer beginner courses at junior colleges or in undergraduate courses and advanced courses i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six to twelve months.

In that a comparison of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who are actually in practice should precede appropriate presentation of direction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insurance review work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and in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of future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Key Words : Review Work, Medical Institutions, Review Institution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병원의 진료비청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지불방식 중에서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날로 상승하는 진료비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이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결코 예외는 아님라고 본다.

이러한 진료비증가 현상은 의료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입의 증대를 의미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출의 증대라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양자간에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대립적 구도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재정이 악화될수록 진료비삭감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병원은 진료비의 합법적 청구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교육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길림, 1995).

1977년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어 피보험자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병원행정업무에 있어서 진료비관리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진료비관리업무는 비교적 복잡하여 전문적인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양급여규칙,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약제료 및 재료대 등을 기초로 한 건강보험 진료비 산정은 전문적이면서도 진료비관리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대한병원협회에 의하면 전국 병원의 보험청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4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 직무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양성도 병원경력을 토대로 한 도제(徒弟)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그 직무는 병원 내 수가코드 관리, 보건복지부·심평원 등의 관련법규 및 심사지침 등 수많은 지식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아직 자격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약 1,000여명의 심사직원이 1차심사를 포함한 심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1차심사 이외에도 심사기준정립, 현지 확인조사, 의료의 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역시 간호학 등 의료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병원 등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직원을 선발하여 자체교육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다(장임악, 2000).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업무에 종사하는 병원직원과 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사평가원직원의 심사기준인식 및 계속교육에 관한 인식도 등 심사와 관련된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업무 발전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필요에서 이루어졌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보험청구직원과 심평원의 보험심사직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심사기준재정비의 필요성과 계속교육의 필요성 등 심사관련 요인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험청구 및 심사업무종사자의 자질향상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경력정도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심사직원의 심사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심사관련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넷째,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 상호간의 심사관련 요인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청구 및 심사업무종사자의 자질향상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업무발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심사 및 청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가. 연구대상

이 연구의 병원청구직원은 전국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급 종합 및 대학병원 81개병원중 무작위로 추출한 25개 병원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보험청구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이 있는 직원을 임의추출방법으로 병원별 인원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표본의 크기는 25 개병원의 청구직원 200명중 176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88.0%이었으나 이중 무성의한 답변을 한 8명을 제외한 168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심평원심사직원은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근무중이면서 과거 또는 현재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을 임의로 200 명을 선정하였으나 151명이 응답을 하여 회수율은 75.5%이었다.

나.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이 직접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조사내용을 확정한 후 서울시내 2개 병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2004년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자료의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하여 본 조사를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는 대상병원의 해당 간부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48시간이내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1인당 설문작성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연구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기존 연구논문에서 도출하여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되, 동일 질문을 병원청구직원용과 심평원심사 직원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병원 청구직원 및 심평원심사직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의 틀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자료는 SPSS/PC+ 10.0K를 사용하여 전산통계처리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으로 연구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고, X^2 -test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특성, 심사기준 인식차이,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심사인력 인식차이, 병원청구 인력 및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 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전공 및 교육과정, 필요한 경력정도를 병원 보험청구직원과 심평원심사직원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그림 1).

청구 및 심사경력에 관한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간의 인식차이는 그동안의 청구 및 심사경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 및 심사경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모든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 및 심사경력을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을 기준으로 청구 및 심사경력이 짧은 집단을 '3년미만'군, 청구 및 심사경력이 긴 집단은 '3년 이상'군으로 분류하여 두 집단별로 병원청구 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간의 심사기준 및 심사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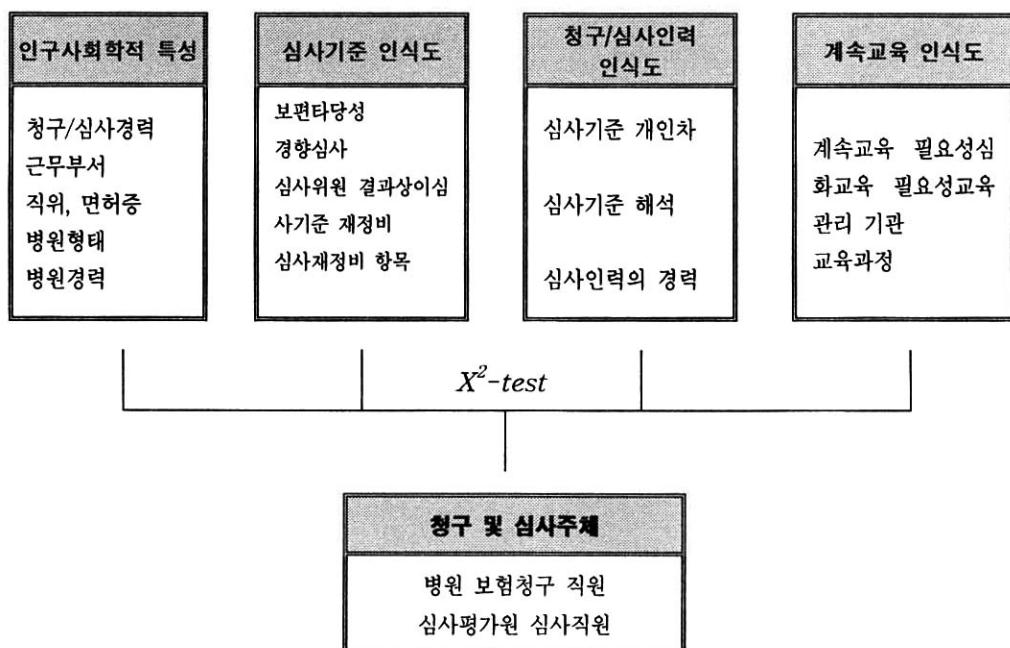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및 분석의 틀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병원청구직원의 보험청구 경력은 8년미만이 116명(69.0%),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심사경력은 61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험청구 및 심사경력을 제외한 병원경력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6년이상이 80명(47.6%), 심사평가원직원은 78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단위 : 명(%)

구 분	병원 청구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χ^2 값
보험청구심사경력	3년미만	58(34.5)	51(33.8)
	3~8년미만	58(34.5)	39(25.8)
	8년이상	52(31.0)	61(40.3)
청구 및 심사경력 제외한 병원근무 경력	3년미만	41(24.4)	38(25.2)
	3~6년미만	47(28.0)	78(51.7)
	6년이상	80(47.6)	35(23.2)
직 위	부서장	16(9.5)	3(2.0)
	중간관리자	18(10.7)	7(4.2)
	일반직원	131(78.0)	141(93.4)
	무응답	3(1.8)	0(0.0)
자 격 종	간호사	126(75.0)	149(98.7)
	의료기사	22(13.1)	1(0.7)
	기타	9(5.4)	1(0.7)
	무응답	11(6.5)	0(0.0)
계	168(100.0)	151(100.0)	

** p < 0.01, *** p < 0.001

연구대상자의 직위별 분포는 병원청구 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일반직원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응답자가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다. 자격증 분포로는 병원청구 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나 의료기사나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병원청구직원의 경우가 많았다.

2.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 비교

가. 연구대상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비교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진료비 심사기준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104명(61.9%), 심사평가원 직원은 '그렇다'라는 의견이 63명(41.7%)으로 많았다(표 2).

심사기준에 대해 실제 심사시 경향심사를 하는 경향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119명(70.8%)이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80명(53.0%)으로 많았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실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라는 의견이 각각 83.9%와 39.1%로 가장 많았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이 143명(85.1%)으로, 심사평가원 직원 42명(27.8%)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았다.

심사기준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그렇다'는 의견이 107명(6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아니다'는 의견이 77명(51.0%)로 가장 많았다.

나. 심사경력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비교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을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간 심사기준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었으며 특히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진료비 심사기준이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은 심사경력 3년이상 직원(69.1%)이, 3년미만인 직원(48.3%)에 비해 많았다(표 3).

심사기준에 대해 실제 심사시 경향심사를 하는 경향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실제 심사시 경향심사를 한다는 의견은 심사경력 3년미만인 직원이 3년이

<표 2>

연구대상별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병원청구직원	심평원직원	χ^2 값
진료비 심사기준 보편타당성	그렇다	7(4.2)	63(41.7)	136.086***
	보통	57(33.9)	82(54.3)	
	아니다	104(61.9)	6(4.0)	
실제 심사 시 경향심사	그렇다	119(70.8)	35(23.2)	80.319***
	보통	22(13.1)	34(22.5)	
	아니다	27(16.1)	80(53.0)	
심사위원별 기준 적용 상이	그렇다	141(83.9)	59(39.1)	75.904***
	보통	19(11.3)	48(31.8)	
	아니다	8(4.8)	39(25.8)	
	무응답	0(0.0)	5(3.3)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성	그렇다	143(85.1)	42(27.8)	121.003***
	보통	22(13.1)	84(55.6)	
	아니다	1(0.6)	23(15.2)	
	무응답	2(1.2)	2(1.3)	
심사기준은 정부정책에 따라 결과상이	그렇다	107(63.7)	25(16.6)	97.599***
	보통	46(27.4)	43(28.5)	
	아니다	14(8.3)	77(51.0)	
	무응답	1(0.6)	6(4.0)	
계		168(100.0)	151(100.0)	

*** p < 0.001

상 직원에 비해 많았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실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의견은 심사평가원 직원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5배정도 많았다. 그러나 심사경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143명(85.1%), 심사평가원 직원은 42명(27.8%)으로 병원청구직원이 약 3배정도 많았다. 특히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심사경력이 3년이상이 3년미만에 비해 많았으며, 이와는 반대

로 심사기준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필요없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 1명(0.6%), 심사평가원 직원은 23명(15.2%)으로 심사평가원 직원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심사평가원 직원의 경우 심사경력 3년미만인 직원이 3년이상인 직원에 비해 약간 많았다.

심사기준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심사평가원 직원은 '아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를 심사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 경력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分	3년 미만		χ^2 값	3년 이상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진료비 심사기준 보편타당성	그렇다	3(5.2)	21(41.2)	33.349***	4(3.6)	42(42.0)	105.964***
	보통	27(46.6)	27(52.9)		30(27.3)	55(55.0)	
	아니다	28(48.3)	3(5.9)		76(69.1)	3(3.0)	
실제 심사 시 경향심사	그렇다	46(79.3)	14(31.4)	30.046***	73(66.4)	21(21.0)	48.029***
	보통	6(10.3)	16(37.3)		16(14.5)	18(18.0)	
	아니다	6(10.3)	19(3.9)		21(19.1)	61(61.0)	
	무응답	0(0.0)	2(27.5)		0(0.0)	0(0.0)	
심사위원회 기준 적용 상이	그렇다	49(84.5)	22(43.1)	22.049***	92(83.6)	37(37.0)	49.120***
	보통	7(12.1)	15(29.4)		12(10.9)	33(33.0)	
	아니다	2(3.4)	11(21.6)		6(5.5)	28(28.0)	
	무응답	0(0.0)	3(5.9)		0(0.0)	2(2.0)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성	그렇다	47(81.0)	18(35.3)	24.620***	96(87.3)	24(24.0)	88.313***
	보통	9(15.5)	25(49.0)		13(11.8)	59(59.0)	
	아니다	1(1.7)	7(13.7)		0(0.0)	16(16.0)	
	무응답	1(1.7)	1(2.0)		1(0.9)	1(1.0)	
심사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과상이	그렇다	35(60.3)	10(19.6)	33.269***	72(65.5)	15(15.0)	67.843***
	보통	16(27.6)	8(15.7)		30(27.3)	35(35.0)	
	아니다	7(12.1)	32(62.7)		7(6.4)	45(45.0)	
	무응답	0(0.0)	0(0.0)		1(0.9)	5(5.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01

3.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비교

가. 연구대상별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비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연구대상 주체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직원에 비해 심사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의료보험법',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의약품 허가사항'등의 항목은 연구대상 주체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4> 연구대상별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단위 : %

구 분	병원 청구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χ^2 값
의료보험법	25.0	9.3	18.658***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6.5	2.0	4.078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 점수	42.3	6.6	64.458***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17.3	5.3	16.28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8.3	3.3	3.734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17.9	4.6	18.942***
기타	92.3	86.8	4.915

** p < 0.01, *** p < 0.001

나. 심사경력별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비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심사경력별로 비교해 보면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 모두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직원에 비해 심사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는 '의료보험법',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등 3개 항목에서 병원청구직원의 의견이 많았다. 심사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는 '의료보험법', '건강보험 요양 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 점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등 4개 항목에서 병원청구직원의 의견이 많았다(표 5).

<표 5> 경력에 따른 심사기준 재정비 필요항목

단위 : %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χ^2 값
의료보험법	25.9	5.9	8.988*	24.5	11.0	8.657*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 위 및 상대가치점수	5.2	3.9	0.997	7.3	1.0	6.989*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 점수	20.2	1.8	19.631***	44.5	8.0	38.314***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표 및 상대가치점수	13.8	5.9	2.845	19.1	5.0	11.74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 항과 심사지침	12.1	2.0	5.071	6.4	4.0	2.475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	25.9	12.0	3.552	13.6	6.0	6.399*
기타	91.4	82.4	2.166	92.7	89.0	3.888

* p < 0.05, ** p < 0.01, *** p < 0.001

4. 심사인력에 대한 인식 비교

가. 연구대상별 심사인력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인력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병원청구 및 심사인력의 가장 중요한 경력 사항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병원청구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병동 근무경력 40명(23.8%), 심사평가원 심사경력 38명(22.6%)의 순이었다. 심사평가원 직원은 심사평가원 심사경력이 73명(4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병동 근무경력 35명(23.2%), 병원청구경력 21명(13.9%)의 순이었다(표 6).

심사기준에 대한 인지수준은 개인차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료비 청구내역서의 심사결과가 동료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아니다'는 의견은 심사평가원 직원이 25명(16.6%)으로 병원청구직원 8명(4.8%)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았다.

<표 6> 연구대상별 청구 및 심사인력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병원청구직원	심평원직원	χ^2 값
청구 및 심사인력 의 가장 중요 경력사항	심평원 심사경력	38(22.6)	73(48.3)	39.859***
	병원청구경력	52(31.0)	21(13.9)	
	중환자실 근무경력	32(19.0)	13(8.6)	
	수술실 근무경력	6(3.6)	4(2.6)	
	일반병동 근무경력	40(23.8)	35(23.2)	
	무응답	0(0.0)	5(3.3)	
심사기준에 대한 인지수준의 개인차이	그렇다	151(89.9)	119(78.8)	9.827
	보통	14(8.3)	29(19.2)	
	아니다	3(1.8)	2(1.3)	
	무응답	0(0.0)	1(0.7)	
직원의 심사기준 해석별 심사결과 상이	그렇다	141(83.9)	108(71.5)	14.171**
	보통	19(11.3)	17(11.3)	
	아니다	8(4.8)	25(16.6)	
	무응답	0(0.0)	1(0.7)	
계		168(100.0)	151(100.0)	

** p < 0.01, *** p < 0.001

나. 심사경력별 심사인력에 대한 인식 비교

병원청구 및 심사인력의 가장 중요한 경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는 병원청구 직원과 심평원 직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심사경력 3년이상인 경우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직원에 비해 일반병동근무 경력, 병원청구경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심사평가원 심사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표 7).

심사기준에 대한 인지수준은 개인차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심사경력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한 의견은 병원청구 직원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진료비 청구내역서의 심사결과가 동료직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심사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는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간에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심사경력 3년이상인 경우는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7> 경력에 따른 청구 및 심사인력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分	3년 미만		3년 이상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청구 및 심사인력 의 가장 중요	심평원(연합회) 심사경력	18(31.0)	23(45.1)	11.052	20(18.2) 50(50.0) 40.474***
경력사항	병원청구경력 중환자실 근무경력 수술실 근무경력 일반병동 근무경력 무응답	23(39.7) 7(12.1) 2(3.4) 8(13.8) 0(0.0)	8(15.7) 10(19.6) 0(0.0) 9(17.6) 1(2.0)	29(26.4) 25(22.7) 4(3.6) 32(29.1) 0(0.0)	13(13.0) 3(3.0) 4(4.0) 26(26.0) 4(4.0)
심사기준에 대한 인지수준의 개인차이	그렇다 보통 아니다 무응답	52(89.7) 5(8.6) 1(1.7) 0(0.0)	39(76.5) 11(21.6) 1(2.0) 0(0.0)	99(90.0) 9(8.2) 2(1.0) 0(0.0)	80(80.0) 18(18.0) 1(1.0) 0(0.0)
직원의 심사기준 해석별 심사결과 상이	그렇다 보통 아니다 무응답	45(77.6) 10(17.2) 3(5.2) 0(0.0)	37(72.5) 8(15.7) 6(11.8) 0(0.0)	96(87.3) 5(4.5) 0(0.0) 9(8.2)	71(71.0) 19(19.0) 1(1.0) 9(9.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1, *** p < 0.001

5. 병원청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비교

가. 연구대상별 병원청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병원 청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병원 청구인력의 계속교육과 심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병원청구직원은 계속교육과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병원 청구인력의 계속교육 관리기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심사관련 교육기관’이라는 의견이 각각 78명(46.4%), 89명(58.9%)로 가장 많았다.

병원 청구인력이 숙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질병별 C-P’를 중요하게 숙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다. 이에 반해 심사평가원 직원은 ‘요양급여 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이라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

나. 심사경력별 병원청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위의 내용을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는 병원청구인력의 계속 및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많았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병원청구인력의 계속 교육과 심화교육의 필요성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심사경력 3년 미만인 직원이 3년이상인 직원에 비해 더 많았다(표 9).

병원청구인력의 계속교육기관으로는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와 3년이상인 경우 모두 ‘심사관련 교육기관’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병원청구인력의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을 심사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 병원 청구직원은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심사평가원 직원은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3년이상인 경우 병원 청구직원은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심사평가원 직원은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심사경력 3년미만인 직원이 3년이상인 직원에 비해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

<표 8> 연구대상별 병원청구 인력의 계속 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병원청구직원	심평원직원	χ^2 값
병원청구인력의 계속 교육 필요성	그렇다 보통 아니다	164(97.6) 3(1.8) 1(0.6)	137(90.7) 13(8.6) 1(0.7)	5.382
병원청구인력 심화교육의 필요성	그렇다 보통 아니다	156(92.9) 9(5.4) 3(1.8)	133(88.1) 18(11.9) 0(0.0)	6.944
병원청구인력 계속 교육기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면허증관련 이익단체 심사관련 교육기관 무응답	47(28.0) 36(21.4) 5(3.0) 78(46.4) 2(1.2)	36(23.8) 24(15.9) 2(1.3) 89(58.9) 0(0.0)	7.778
병원청구인력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	행위, 약제 인정기준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재료대 인정기준 감염관리기준 상병코드관리지침 병원시설기준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통계학 수술별 Manual 질병별 C-P	56(33.3) 66(39.3) 1(0.6) 0(0.0) 1(0.6) 0(0.0) 37(22.0) 2(1.2) 1(0.6) 4(2.4)	30(19.9) 69(45.7) 1(0.7) 1(0.7) 2(1.3) 1(0.7) 47(31.1) 0(0.0) 0(0.0) 0(0.0)	17.595*
계		168(100.0)	151(100.0)	

* p < 0.05

원은 심사경력 3년이상인 직원이 3년미만인 직원에 비해 많아 심사경력에 따라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표 9>

경력에 따른 병원청구인력 계속 교육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分	3년 미만			3년 이상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χ^2 값
병원청구인력의 필요성	그렇다	57(98.3)	49(96.1)	107(97.3)	88(88.0)	
계속 교육 필요성	보통	1(1.7)	2(3.9)	0.490	2(1.8)	11(11.0)
	아니다	0(0.0)	0(0.0)		1(0.9)	1(1.0)
병원청구인력 심화교육의 필요성	그렇다	54(93.1)	48(94.1)	102(92.7)	85(85.0)	
	보통	3(5.2)	3(5.9)	0.907	6(5.5)	15(15.0)
	아니다	1(1.7)	0(0.0)		2(1.8)	0(0.0)
병원청구인력 계속 교육기관	심사평가원	23(39.7)	14(27.5)	24(21.8)	22(22.0)	7.138
	병원협회	9(15.5)	7(13.7)	27(24.5)	17(17.0)	
	면허증관련 이익단체	0(0.0)	1(100.0)	3.166	5(4.5)	1(1.0)
	심사관련 교육기관	26(44.8)	29(56.9)	52(47.3)	60(60.0)	
	무응답	0(0.0)	0(0.0)		2(1.8)	0(0.0)
병원청구인력	행위,약제 인정기준	19(32.8)	12(23.5)	22.797**	37(33.6)	18(18.0)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30(51.7)	15(29.4)		36(32.7)	54(54.0)
	재료대 인정기준	0(0.0)	0(0.0)		1(0.9)	1(1.0)
	감염관리기준	0(0.0)	0(0.0)		0(0.0)	1(1.0)
	상병코드관리지침	0(0.0)	1(2.0)		1(0.9)	1(1.0)
	병원시설기준	0(0.0)	0(0.0)		0(0.0)	1(1.0)
	해부학,생리학,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5(8.6)	23(45.1)		32(29.1)	24(24.0)
	통계학	1(1.7)	0(0.0)		1(0.9)	0(0.0)
	수술별 Manual	1(1.7)	0(0.0)		0(0.0)	0(0.0)
	질병별 C-P	2(3.4)	0(0.0)		2(1.8)	0(0.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5, ** p < 0.01

6.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비교

가. 연구대상별 심평원 심사인력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과 심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과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0).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 관리기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심사평가원’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심사평가원 직원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 이밖에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 교육을 담당해야 할 기관으로 ‘심사관련 교육기관’이라고 응답한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이 66명(39.3%)으로 심사평가원 직원 25명(16.6%)에 비해 약 2.4배정도 많았다.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이 숙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이라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요양급여 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수술별 manual’을 중요하게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다. 심사평가원 직원은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질병별 C-P’라고 응답한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

나. 심사경력별 심사평가원심사인력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을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는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 및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많았으며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기관으로는 심사경력 3년미만과 3년이상인 경우 모두 병원청구직원은 ‘심사관련 교육기관’, 심사평가원 직원은 ‘심사평가원’이라는 의견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을 심사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 병원 청구직원은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심사평가원 직원은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이 중요

<표 10> 연구대상별 심평원 심사인력의 계속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병원청구직원	심평원직원	χ^2 값
심평원 심사인력의 계속 교육 필요성	그렇다	165(98.2)	141(93.4)	7.732
	보통	1(0.6)	9(6.0)	
	아니다	2(1.2)	1(0.7)	
심평원 심사인력의 심화교육 필요성	그렇다	156(92.9)	131(86.8)	5.175
	보통	9(5.4)	18(11.9)	
	아니다	3(1.8)	1(0.7)	
심평원 심사인력 계속 교육 기관	무응답	0(0.0)	1(0.7)	47.442***
	심사평가원	76(45.2)	123(81.5)	
	병원협회	23(13.7)	2(1.3)	
	면허증관련 이익단체	3(1.8)	1(0.7)	
심평원 심사인력	심사관련 교육기관	66(39.3)	25(16.6)	22.832*
	행위, 약제 인정기준	50(29.8)	26(17.2)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85(50.6)	68(45.0)	
	재료대 인정기준	0(0.0)	1(0.7)	
	감염관리기준	1(0.6)	0(0.0)	
	상병코드관리지침	0(0.0)	2(1.3)	
	병원시설기준	1(0.6)	0(0.0)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18(10.8)	32(21.9)	
	조직이론	0(0.0)	1(0.7)	
	수술별 Manual	4(2.4)	2(1.3)	
	질병별 C-P	7(4.2)	14(9.3)	
	무응답	2(1.2)	5(3.3)	
계		168(100.0)	151(100.0)	

* p < 0.05, *** p < 0.001

하다고 하였다. 또한 3년이상인 경우 병원 청구직원은 ‘행위 및 약제 인정기준’,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해부학, 생리학, 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심사평가원 직원은

'질병별 C-P'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심사경력 3년이상인 직원이 3년미만인 직원에 비해 많았다.

<표 11> 경력에 따른 심평원 심사인력 계속 교육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3년 미만		χ^2 값	3년 이상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직원	
심평원 심사인력의 계속 교육 필요성	그렇다	57(98.3)	51(100.0)	108(98.2)	90(90.0)	7.577
	보통	0(0.0)	0(0.0)	1(0.9)	9(9.0)	
	아니다	1(1.7)	0(0.0)	1(0.9)	1(1.0)	
심평원 심사인력 심화교육 필요성	그렇다	53(91.4)	46(90.2)	1.161	103(93.6)	85(85.0)
	보통	4(6.9)	5(9.8)		5(4.5)	13(13.0)
	아니다	1(1.7)	0(0.0)		2(1.8)	1(1.0)
	무응답	0(0.0)	0(0.0)		0(0.0)	1(1.0)
심평원 심사인력	심사평가원	20(34.5)	40(78.4)	21.707***	56(50.9)	83(83.0)
계속 교육 기관	병원협회	12(20.7)	2(3.9)		11(10.0)	0(0.0)
	면허증관련 이익단체	0(0.0)	0(0.0)		3(2.7)	1(1.0)
	심사관련 교육기관	26(44.8)	9(17.6)		40(36.4)	16(16.0)
심평원 심사인력	행위,약제 인정기준	18(31.0)	12(23.5)	17.620*	32(29.1)	14(14.0)
가장 중요한 숙지사항	요양급여기준 및 복지부 유권해석	27(46.6)	17(33.3)		58(52.7)	51(51.0)
	재료대 인정기준	0(0.0)	1(2.0)		0(0.0)	0(0.0)
	감염관리기준	0(0.0)	0(0.0)		1(100.0)	0(0.0)
	상병코드관리지침	0(0.0)	2(3.9)		0(0.0)	0(0.0)
	병원시설기준	1(1.7)	0(0.0)		0(0.0)	0(0.0)
	해부학,생리학,진단검사 의학 등 기초의학	6(10.3)	15(29.4)		12(41.4)	17(17.0)
	조직이론	0(0.0)	0(0.0)		0(0.0)	1(1.0)
	수술별 Manual	1(1.7)	0(0.0)		3(2.7)	2(2.0)
	질병별 C-P	5(8.6)	1(2.0)		2(1.8)	13(13.0)
	무응답	0(0.0)	3(5.9)		2(1.8)	2(2.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5, *** p < 0.001

7. 전공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비교

가. 연구대상별 전공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업무를 수행시 학부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부전공에 따라 심사업무 수행에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은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직원에 비해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보통'과 '아니다'라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표 12).

<표 12>

연구대상별 전공 및 교육과정 인식

단위 : 명(%)

구 분		병원청구직원	심평원직원	χ^2 값
학부전공별 심사업무수행의 차이	그렇다	94(56.0)	47(31.1)	39.549***
	보통	27(16.1)	68(45.0)	
	아니다	19(11.3)	24(15.9)	
	무응답	28(16.7)	12(7.9)	
심사 및 진료비 청구 전문교육기관 과정	학부과정	34(20.2)	33(21.9)	37.927***
	전문대과정	56(33.3)	12(7.9)	
	대학원과정	25(14.9)	26(17.2)	
	6-12개월 양성과정	50(29.8)	69(45.7)	
	무응답	3(1.8)	11(7.3)	
계		168(100.0)	151(100.0)	

*** p < 0.001

나. 심사경력별 전공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업무를 수행시 학부전공에 따른 인식차이는 심사경력이 3년미만인 경우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간 의견의 차이는 없었으나 심사경력 3년이상인 경우는 병원청구직원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학부전공별 심사업무수행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13).

심사 및 진료비청구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의 경우 '전문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6-12개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았다. 이를 심사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심사경

력 3년미만의 경우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학부과정', '전문대과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심사평가원 직원은 '6-12개월 단기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 심사경력 3년이상인 경우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전문대과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심사평가원 직원은 '학부과정', '6-12개월 단기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다.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전문대과정을 선호하는 의견이 심사경력 3년미만에 비해 3년이상이 많았으며, 심사평가원 직원은 '6-12개월 과정'을 선호하는 의견이 심사경력 3년 이상에 비해 3년미만이 많았다.

<표 13> 경력에 따른 전공 및 교육과정 인식차이

단위 : 명(%)

구 분		3년 미만		χ^2 값	3년 이상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직원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직원	
학부전공별 심사	그렇다	32(55.2)	26(51.0)	3.521	62(56.4)	21 (21.0)	44.804***
업무수행의 차이	보통	9(15.5)	15(29.4)		18(16.4)	53(53.0)	
	아니다	8(13.8)	5(9.8)		11(10.0)	19(19.0)	
	무응답	9(15.5)	5(9.8)		19(17.3)	7(7.0)	
심사/진료비 청구	학부과정	15(25.9)	8(15.7)	12.841*	19(17.3)	25(25.0)	29.420***
전문교육기관 과정	전문대과정	13(22.4)	3(5.9)		43(39.1)	9(9.0)	
	대학원과정	13(22.4)	9(17.6)		12(10.9)	17(17.0)	
	6-12개월 양성과정	15(25.9)	28(54.9)		35(31.8)	41(41.0)	
	무응답	2(3.4)	3(5.9)		1(0.9)	8(8.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5, *** p < 0.001

8. 심사업무수행 관련 경력에 대한 인식비교

가. 연구대상별 심사업무수행관련 경력에 대한 인식 비교

원활한 청구 및 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필요한 경력이 3-4년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이상이었

다. 특히 심사평가원 직원은 필요한 경력이 3-4년 경력이라는 의견이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4).

심사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에 병원근무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병원근무경력중 보험청구업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경력은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직원 모두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병원청구직원은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 '수술실 간호사 경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심사평가원직원에 비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4> 연구대상별 심사업무수행과 연관된 필요한 경력정도

단위 : 명(%)

구 분	병원 청구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χ^2 값
원활한 청구 및 2년이하	40(23.8)	33(21.9)	2.496
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력	3-4년	78(46.4)	79(52.3)
	5년이상	48(28.6)	35(23.2)
	무응답	2(1.2)	4(2.6)
병원근무경력	예	167(99.4)	138(91.4)
	아니오	1(0.6)	13(8.6)
병원근무경력 중	중환자실 간호사	98(58.3)	76(50.3)
보험청구업무에 필요한 경력	의무기록과 소속 의무기록사	2(1.2)	0(0.0)
	병원원무과 소속 행정직원	2(1.2)	2(1.3)
	내과병동 간호사	35(20.8)	35(23.2)
	외과병동 간호사	5(3.0)	5(3.3)
	수술실 간호사	21(12.5)	9(6.0)
	기타	2(1.2)	1(0.7)
	무응답	3(1.8)	23(15.2)
계		168(100.0)	151(100.0)

*** p < 0.001

나. 심사경력별 심사업무수행관련 경력에 대한 인식 비교

심사경력 3년미만인 경우 병원청구직원은 '내과병동 간호사 경력', 심사평가원 직원은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심사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병원청구직원은 심사평가원 직원에 비해 '중환자실 간호사 경력', 심사평가원 직원은 병원청구직원에 비해 '내과병동 간호사 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15).

<표 15> 경력에 따른 심사업무수행과 연관된 경력정도

단위 : 명(%)

구 분	3년 미만		χ^2 값	3년 이상		χ^2 값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병원청구 직원	심평원 심사직원	
원활한 청구 및 심사업무에 필요한 경력 무응답	2년이하	20(34.5)	16(31.4)	20(18.2)	17(17.0)	0.395 5.215
	3-4년	24(41.4)	23(45.1)	54(49.1)	56(56.0)	
	5년이상	12(20.7)	11(21.6)	36(32.7)	24(24.0)	
	무응답	2(3.4)	1(2.0)	0(0.0)	3(3.0)	
병원근무경력	예	57(98.3)	50(98.0)	0.008	110(100.0)	88(88.0) 14.000**
	아니오	1(1.7)	1(2.0)		0(0.0)	12(12.0)
병원근무경력 중	중환자실 간호사	29(50.0)	32(62.7)	8.955	69(62.7)	44(44.0) 26.967***
보험청구업무에 필요한 경력	의무기록과 소속 의무기록사	2(3.4)	0(0.0)		0(0.0)	0(0.0)
	병원원무과 소속 행정직원	1(1.7)	0(0.0)		1(0.9)	2(2.0)
	내과병동 간호사	15(25.9)	7(13.7)		20(18.2)	28(28.0)
	외과병동 간호사	3(5.2)	2(3.9)		2(1.8)	3(3.0)
	수술실 간호사	5(8.6)	4(7.8)		16(14.5)	5(5.0)
	기타	1(1.7)	0(0.0)		1(0.9)	1(1.0)
	무응답	2(3.4)	6(11.8)		1(0.9)	17(17.0)
계	58(100.0)	51(100.0)		110(100.0)	100(100.0)	

*** p < 0.001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진료비심사업무의 질을 높이고 병원보험청구 업무와 심사평가원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개발 및 계속교육정책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병원청구직원(11개 의료원산하 25개병원 소속)168명과 심사평가원(본부4개실 소속)151명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관한 인식정도, 계속교육, 전공 및 교육과정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병원의 청구직원(보험심사과, 의료정책과, 적정진료지원팀등)과 심사평가원의 심사직원(심사1실, 심사2실, 의료급여실, 심사기준실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은 심사기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직원의 41.7%가 병원청구직원(4.2%)에 비하여 현행심사기준이 보편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병원청구직원의 85.1%가 심사평가원직원(27.8%)에 비하여 현행심사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병원청구직원의 63.7%가 심사평가원직원(16.6%)에 비해 정부정책에 따라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은 심사기준에 대한 인지수준의 개인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89.9%, 78.8%로 두 집단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직원의 심사기준해석 결과에 따라 심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각각 83.9%, 71.5%라고 응답하여 진료비청구업무와 진료비심사업무에 있어 개인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두 집단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청구인력과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모두 심화교육과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넷째,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58.9%와 병원청구직원의 46.4%가 병원청구인력은 심사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고 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었으나 심사평가원 심사인력의 계속 교육은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81.5%와 병원청구직원의 45.2%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병원청구인력과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모두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정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두 집단 모두 원활한 심사업무와 청구업무수행에는 3-4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된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심사기준에 관한

인식의 차이, 심화교육 및 계속교육에 관한 인식의 동질성, 계속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험심사업무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제언 하고자한다.

첫째, 심화교육 및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병원청구인력과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모두 심화교육 및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심화교육은 전문대이상의 과정에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심사평가원직원의 다수의견이 6-12개월 과정을 선호한 것은 학부 과정을 수료 후 설치되는 전문과정으로 이해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심사 및 청구인력에 대한 심화 및 계속교육은 전문대과정이나 학부과정에 초급과정이 설치되고 심화과정은 전문대학원이나 6-12개월의 양성과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연구로 우리나라 보험심사업무의 질적인 향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병원직원과 심사평가원직원의 인식도를 비교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병원청구직원과 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인식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심화교육 및 계속 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시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교육 기관의 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 했으므로 향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도구가 개발되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강창렬(2000). 의료수가관리

김은영(2000). 유아의 영재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인식비교연구.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정희(1999).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직장애착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김창엽, 강길원(1998). 외국의 심사평가기구. 한국의료QA학회 연제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권명화(2002). 보험심사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에 관한 고찰.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박종홍(1982). 인식이론. 서울:박영사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19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과 운영방안연구 최종 보고서

이미정(2000). 초등학교 체벌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비교 연구. 공주교대 석사학위논
문, 2000

- 이석현(2002).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월간 심평
- 이수연(1999). 밀레니엄시대의 보험심사. 보험심사 간호사회 회보. 16호
- 이수연(2000). 의료수가관리. 병원신보, 3월호
- 장임악(2000).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응방법 조사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 최길림(1995). 의료보험입원진료비 청구누락방지를 위한 병원자체심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건강보험관리사 자격종목개발연구